

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8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2년 11월 22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39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js9695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상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2. 11. .

발 의 자 : 박상현, 이길호, 신경원,
김귀근, 신금자, 이우천,
이훈미, 이동한, 이혜승

1. 제안이유

- 기존 조례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어 「청소년 기본법」상 청소년의 정의와 맞게 24세 이하로 확대하여 노동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, 조례 제명을 현행화함.

2. 주요내용

- 청소년의 범위를 24세 이하로 확대 (안 제2조제1항제1호)
- ‘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’를 ‘군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’로 수정 (안 제10조제3항)

군포시 조례 제 호

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19세 미만”을 “24세 이하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「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
“「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청소년”이란 「근로기준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<u>19</u> <u>세 미만</u> 의 사람으로서, 군포시 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 또 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 2. · 3. (생 략) ② (생 략)	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<u>24</u> <u>세 이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0조(청소년 노동인권센터) ① · ② (생 략) ③ 수탁자의 선정은 「 <u>군포시 사</u> <u>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</u> <u>례</u> 」에 따르며, 센터의 위탁 운 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	제10조(청소년 노동인권센터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「 <u>군포시 사무</u> <u>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</u> 」--- ----- ----- -----.